
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(박희승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장애인학대등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“홀로 사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가사 및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·단체”를 추가함(안 제59조의3제1항제2호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.

(전문위원 이 은 정)